

[별표2-1]

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범위

| 공 종 | 구 분 |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|
|---|-----|---|
| 1) 교량 | | |
| A등급 ·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| | ○ 길이 100m 이상 A등급 교량 |
| B등급 ·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· 경간 50m 이상이 포함된 연속교, 연도교, 해상교량 | | ○ 길이 100m이상의 A등급교량,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|
| C등급 ·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, 1,000㎡이상의 일반교량(경간 10m이상) | | ○ 길이 100m 이상 A, B, C등급 교량 |
| 2) 항 만 가. 계류시설 | | ○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(준설, 매립 제외) |
| 나. 외곽시설 | | ○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(준설, 매립 제외) |
| 3) 지하철(도시철도) | | ○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|
| 4) 터널공사 | | ○ 철도·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,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(지하차도공사 제외) |
| 5) 쓰레기소각로 | | ○ 소각단위 30톤/일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 · 소각단위 용량톤수 : 쓰레기 1일소각톤수 |
| 6) 폐수종말처리장 가. 폐수종말처리장 | | ○ 처리용량 3,000톤/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|
| 나. 고도처리시설 | | ○ 처리용량 3,000톤/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○ 처리용량 5,000톤/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 처리시설 |
| 7) 하수종말처리장 가. 하수종말처리장 | | ○ 처리용량 3,000톤/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|
| 나. 고도처리시설 | | ○ 처리용량 3,000톤/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○ 처리용량 5,000톤/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 처리시설 |
| 8) 관람집회 시설 가. 공연장, 집회장 | | ○ 연면적 3,000㎡ 이상인 공연장, 집회장 |
| 나. 관람장, 관람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운동장체육관 | | ○ 연면적 3,000㎡ 이상인 관람장, 운동장, 체육관 |
| 9) 전시시설(전시장) | | ○ 연면적 3,000㎡ 이상인 전시장 |